

## 주식회사 하나투어 이사회 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#### 제 1 조 목 적

본 규정은 주식회사 하나투어("회사")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 2 조 적용범위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제 3 조 권 한

-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

### 제 2 장 구 성

#### 제 4 조 구 성

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#### 제 5 조 의 장

- ① 이사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 중 각 1인으로 정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장이 이사회에 불참하거나 달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부의장도 불참한 경우 당해 회의에 출석한 이사들의 결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.

## 제 6 조 종 류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말(3월, 6월, 9월 12월)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에 개최한다.
-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## 제 7 조 소집권자

-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이와 같이 소집된 회의에서는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의장이 된다.

## 제 8 조 소집절차

-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과 장소, 전화회의로 참석할 이사가 사용할 전화번호를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이러한 회일과 장소, 전화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. 통지는 문서,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구두(유·무선통신 포함)로도 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또는 통지기간을 단축하여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고, 특정 이사의 동의로 해당 이사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생략하거나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## 제 9 조 결의방법

- ①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승인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이사는 재적이사나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# 제 10 조 부의사항

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 아래 부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경영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회사의 임직원이 전결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.

##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1) 주주총회의 소집
- 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
- 3) 영업보고서의 승인
- 4) 재무제표의 승인
- 5) 정관의 변경
- 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, 주식의 포괄적 교환,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회사의 계속
- 7)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8) 이사의 보수 한도 결정
- 9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,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
- 10) 주식배당 및 정기배당 결정
- 11) 자본의 감소
- 12) 법정 준비금의 감액
- 13)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
- 14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15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16) 기타 회사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## 2. 법인사무 관련 사항

- 1) 국내외 지점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, 이전 및 폐지

- 2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  - 3) 증권시장에 주권 등 상장결정
  - 4) 증권시장 등에서의 상장폐지 결정, 매매거래정지, 상장폐지 조치 등
  - 5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의 결정
  - 6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  - 7) 회생절차개시 및 파산 신청
3. 지배구조 관련 사항
- 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  - 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  - 3) 타회사의 임원 겸직 승인
  - 4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- 5) 공동대표의 결정
  - 6)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  - 7)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- 8)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  - 9)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4. 재무에 관한 사항
- 1) 분기배당 결정
  - 2) 준비금의 자본전입
  - 3) 결손의 처분
  - 4) 신주의 발행
  - 5) 유상증자시 실권주식 처리
  - 6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사채발행의 위임
  - 7) 전환사채의 발행

- 8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9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(신탁계약의 체결, 해지 또는 연장 결정 포함)
- 10) 자기주식의 소각
- 11)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정책의 중대한 변경
- 12) 내부회계관리 운영 보고

5. 기타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㉔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
제 11 조 이사회내 위원회

- ㉑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- ㉒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및 관련 법령상 위임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- ㉓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㉔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- ㉕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## 제 12 조            관계인 등의 출석

- ①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
## 제 13 조           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

-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 제 14 조            의사록

-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- ③ 주주는 영업 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## 제 15 조            간 사

-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이 맡고, 주주총회, 이사회, 이사회내 위원회 등의 운영 및 기타 사무를 담당한다.

## 부칙

제 1 조 (시행일) 본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개정일) 본 규정은 2007년 4월 19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 (근거문서 840684)

제 3 조 (개정일)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

제 4 조 (개정일) 본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

제 5 조 (개정일) 본 규정은 2020년 [3]월 [26]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.